

# 광 주 지 방 법 원

## 제 1 행 정 부

[2018구합13681]

사 건 명 : 일시보상급여 청구의 소

원 고 : 원고1

목포시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변론 종결 : 2019. 7. 25.

판결 선고 : 2019. 9. 19.

#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172,080,656원 및 이에 대한 2019. 7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

#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

# 이 유

## 1. 처분의 경위 등

가.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[이하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을 총칭하여 '원고 등'이라 한다]은 공동으로 ○○시 ○○로 ○○○에서 ○○○○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,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이하 '어선원재해보험법'이라 한다) 제9조에 의하여 ○○○○○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급여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

나. 어선원인 소외 ○○○은 2015. 10. 14. 17:30경 전남 ○○군 ○○면 ○○해상의 ○○호 선상에서 작업하던 중 로프에 맞아 의식저하 상태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로 보존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.

다, 피고는 2017. 10. 25. ○○○에 대하여 일시보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, 그 금액은 172,080,656원이다.

라. 원고 등은 ○○○으로부터 2017. 10. 29부터 2019. 6. 26.까지의 진료비 173,962,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, 2, 5, 7, 8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원고의 주장

원고 등은 ○○○에 대하여 173,962,740원의 진료비 채권을 가지고 있고, ○○○은 무자력인데 피고에 대하여 172,080,656원의 일시보상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, 피고는 ○○○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172,080,6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 3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

#### 4. 판단

가. 원고 등이 ○○○에 대하여 173,962,740원의 진료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, 피고가 ○○○에 대하여 172,080,656원의 일시보상급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, 이 법원의 ○○군수 및 ○○○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○○○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 내역 및 2015. 1. 1.부터 2018. 12. 31.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○○○이 무자력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, 피고는 원고에게 172,080,6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9. 7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,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4, 제35조에 따라 ○○○의 피고에 대한 일시보상급여 채권은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자만 대위할 수 있으므로, 원고는 ○○○의 일시보상급여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어선원재해보험법 제34조 제2항은 어선원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데,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경우까지 금지한다면 의료인이 치료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어 위 취지와는 달리 자력 없는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게 된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채권자대위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.(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4다6542 판결,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1351 판결 등 참조)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

#### 5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1  
판사2  
판사3

